

광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868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고A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 2023. 3. 22.

판결 선고 2023. 6.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1. 11. 4. 접수 제17628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11. 4. 접수 제10492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 (주)D은 E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45,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21. 6. 1. 원고와 사이에 C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F	E 은행 상무지점 기업일반자금 대출	2021-06-01 2022-05-31	45,000,000 38,250,000	소외 D	소외 C
---	---------------------	-----------------------	-----------------------	------	------

○ (주)D의 2022. 3. 10. 원리금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22. 6. 30. E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22. 6. 30. 원리금 합계 38,865,8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는 구상금 회수를 위한 채권집행보전비용으로 3,287,649원을 대지급한 후, 2022. 1. 18. 51,442원, 2022. 2. 3. 25,721원, 2022. 3. 7. 25,751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3,184,735원이 되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미수위약금은 57,740원이며, 지연손해금률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C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

○ C는 2021. 11.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 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1. 11. 4. 접수 제17628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11. 4. 접수 제10492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등으로 표시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주)D 사이에 사전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주)D이 E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무렵 (주)D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D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5개월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5개월여 만에 (주)D이 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원고의 대위 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전북 고창군 G 전 1345m²(공시지가 10,087,500원, H 답 2297m² 공시지가 22,947,030원, I 답 1462m² 공시지가 14,605,380원,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아파트 L호 건물시가표준액 26,351,96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56,743,000원, M은행에 대한 채무 13,000,000원, N은행에 대한 채무 26,998,000원, O카드에 대한 채무 5,385,000원, O은행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등이 있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6. 28. C에게 피고의 처 P 명의 Q조합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R 증서 2018년 제29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후 피고는 (주)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C의 연대보증사실을 모른 채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1. 11. 4.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구체적 검토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와 같이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호산

별지